

연방의회선거운동에 있어서 허용되는 만화

쾰른 고등법원 1982년 6월 8일 판결

- 1SS 237/82 사건 -

<적용법조>

독일기본법 제 5 조 및 독일형법 제 185 조

<판결요지>

1. 정치적인 만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만이 참작되어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스스로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의미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배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표현내용을 고려해서 평균적인 독자의 입장이 판단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
2. 선거운동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치적인 분쟁을 형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의 의사표시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3. 의사표시의 형식도 또한 원칙적으로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표시자의 자치에 속하는 것이다.
4. 만화적인 표현이 일반의 독자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 만으로서는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사실개요>

1980 년의 독일연방의회의 선거운동에서 당시 CDU/CSU 정당의 수상 후보자이던 바이에른 주수상인 명예박사 스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를, 뮌헨에서 유포된 전단의 배포를 통해서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배심법원은 피고인을 모욕죄로서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

위 전단에는 큰 활자로 2 줄에 걸쳐서 『KRIEG DEM KRIEGE』 (이는 세계 1 차 대전 후에 있어서 독일 노동운동의 슬로건이었다) 및 『STOPPT STRAUSS』 라고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 부분에는 중간부분에 2 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인위적인 만화로서 그려져 있는 바, 그 중의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 피해자의 우호적이고 진지한 얼굴의 옆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 중의 왼쪽 부분은 두개골 부분이 열린 상태로 있으면서 왼쪽을 가리키는 두개골의 옆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 두개골 부분으로부터는 수많은 로켓트, 탱크, 비행기 및 기타의 전쟁 무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두개골의 이빨사이에는 다시 2 개의 로켓트가 보이고 있었다. 위 전단의 하단부분에는 이미 고지된 데모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그 규탄자들의 성명들이 쓰여져 있었다. 배심법원(1 심법원)은 피고인을 모욕죄로서 유죄의 판결을 하였지만 이에 반하여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이유>

A.

정치적인 만화나 풍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판례는 확고한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Reich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풍자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과다하게 과장하는 것, 즉 본래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위 실제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내용을 부여한다는 것은 풍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은, 풍자의 본질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표현된 내용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진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진실로 의도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즉 사실상으로 이러한 더 작은 내용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

그리하여 이러한 풍자의 성질로부터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묘사된 내용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특히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풍자적인 내용을 그 문자대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오히려 말이나 그림으로 둘러싸인 것을 벗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전단의 내용은 그 만화 및 문구에 따라서 그의 본질적인 의미내용을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RG J W 1924, 1526; Bay ObLGst 57,126,129; OLG Hamburg, MDR 1967, 146; SenU Arch PR 1967, 116; Herdegen in LK, 9. Aufl., § 185 StGB, Rdnr, 12 ; Wurtemberger, NJW 1982, 610, 612)

이와 같은 법률적인 원칙에 따라서 지방법원은 후에 취소된 판결에서 만화적인 표현의 성질을 상세히 고려하여 본건 전단내용의 핵심을 분명히 하였다.

I

위 전단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항소법원은 검찰이나 또는 고소인이 위 전단에 대해서 취한 해석과는 분명히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즉 항소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위 전단은 고소인이 전쟁이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고 그의 정책은 공격전쟁의 금지나 국민간의

평화적인 공존을 해치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고소인이 전쟁광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라고 위 전단으로부터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고 생각된다.

1. 본건 전단의 문구 및 회화적인 표현의 내용적인 해석은 오로지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문제이고 또한 사실심법관의 직책인 것이다. (RG JW 1924, 1526; BGHSt 3, 69f; 21, 371f; KG JR 1980, 290 m. Anm. Volk; OLG Hamburg NJW 1970, 1649; OLG Stuttgart OLG St, §186, S. 3 ; OLG Köln-3. Strafsen-NJW 1982, 657. SenE NJW 1969, 1562; MDR 1954, 631; NZWehrR 1980, 150. AfP 1979, 411; NSt Z 1981, 183; OLGSt § 185, S. If; OLGSt §185, S. 13, 15)

당 법원은 상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심법관의 이러한 해석을, 사실심법관이 위와 같은 내용에 관련된 해석을 함에 있어서 독일 형사소송법 제 337 조 제 2 항의 법규정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넘는 범위의 심사는, 그 의사표시가 문서로서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판결문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상고법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KG JR 1980, 290; Sen E NZWehrR 1980, 150; OLGSt §185, S. 13. 15)

2. 항소법원은 의사표시의 의미내용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전단을 작성한 자 본인이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아니하였다.(BGH MDR 1955, 396; BayObLG NJW 1957, 1607f ; OLG Hamm NJW1971, 1892; Lenckner in Schonke/Schroder, 21, Aufl. §185 Rdnr. 8; Lackner, 14. Aufl. § 185 StGB, Rdnr. 3a)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법원은 위 전단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슬로건이 그 당시에 있어서 일반공중들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위 만화의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의 「독자」 또는 「관찰자」를 중요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중요시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상고에 의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형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단지 위 전단의 그림 및 문구가 일반의 관찰자에 대해서 즉 객관적으로 보아서 표시된 의견이 전단작성자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불명히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 항소법원은 객관적인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등의 불분명한 또는 기타의 올바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법률상 정당하게, 위 전단이 당시의 외교정책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합리적이고 편견 없는 독자」, 「편견 없는 독자」 또는 「합리적인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법원은 독일 대법원의 판례들이 적용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위 판례들에 있어서는 「편견 없는 독자」(BGHSt 3. 346, 347), 「합리적인 평균적인 독자」(BGHSt 16, 49, 53), 「합리적인 제삼자」(BGHSt 19, 235, 237; SenE vom 25. 8. 1970-Ss I19/70-), 「편견 없는 관찰자」(SenE NStZ 1981, 183) 등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표현들이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약간씩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아 항소법원이 사용한 「편견없는 독자」라는 표현이 「평균적인 독자」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위 항소법원의 해석은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의미가 애매하다거나 또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위 법원의 문구에 대한 해석 및 만화의 핵심내용에 대한 해석 역시 모두 결국 분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 항소법원이 고소인의 얼굴모습을 두개골의 모양에 야누스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일반의 독자에게 있어서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거나 또는 위 법원의 해석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은 앞에서 말한 바와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 것이다. 항소법원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순수하게 개념상으로는 위 전단의 내용이 검찰이 그 공소제기의 기초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 항소법원 스스로는 위 전단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아서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있다고 인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법원은 오히려 나아가서 위 전단을 이성적으로 또한 편견 없이 관찰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해석이 내려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그리고 야누스의 머리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문구의 반복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이로부터 고소인이 「전쟁광」이라든가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으로서 표현되었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5. 끝으로 항소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불완전하거나 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점은 특히 「STOPPT STRAUSS」라는 슬로건의 해석 (vgl. dazu auch Bay VerfGH NJW 1982, 1089 ; Suhr, NJW 1982, 1065) 및 「KRIEC DEM KRIEGE」라는

슬로건과의 결합에 있어서 타당한 바, 위 항소법원은 분명히 위 슬로건의 핵심을 간파하여, 이는 고소인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는 바, 이는 타당한 것이었다. 나아가서 위 법원이 위 전단의 문구 및 만화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해석한 것 역시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취소된 제 1 심 판결문은 먼저 문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만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는 형식으로 씌여 있었다. 그러나 제 1 심 법원이 위 양자가 종합하여 만들어내는 느낌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 있어서는 공소의 제기 및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에서의 유죄판결이래, 위 전단의 문구 및 만화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검찰이나 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 및 고소인이 그의 정책으로 인하여 헌법상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침략전쟁의 금지라는 원칙을 훼손하였는가 또는 고소인이 「전쟁광」 또는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으로서 경멸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문제로 되어왔던 것이었다. 분명히 항소법원은 위 문구 및 만화를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였다. 항소법원은 또한 그 판결이유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 만화는 그 자체로서 또는 그 문구와 결합하여서 고찰해 보더라도 결코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 항소법원이 그 문구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만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서로 결합하여 고찰하였다고 하는 설명이 본건에 있어서 형식적인 표현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위 문구나 만화 또는 양자의 결합에서부터 어떤 다른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위 항소법원이 이를 전혀 간과해 버렸다는 내용의 주장도 역시 상고에 있어서 나타나 있지않은 것이다.

6. 이에 따라서 당원은, 위 전단의 내용에 의해서는, 고소인이 단지 전쟁과 죽음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든가, 침략전쟁 금지를 무시하였다든가, 또는 전쟁광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자라고 비난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법원의 해석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며 본건은 그 사실적인 기초에 있어서 1981년 12월 9일자 Hamm 소송법원의 판결(NJW 1982. 659)의 기초가 된 사건과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은 선거용 전단에서 「Stoppt Strauss ! Gegen Reaktion, 파시즘과 전쟁」이라는 슬로건하에서 철면피한 전쟁광으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건에서는 고소인은 냉혈적이고 경박하며 그의 적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이고, 그가 파시즘 및 전쟁광의 대표자로서 여겨질 수 있도록 묘사된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이었다.

II

그리하여 당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 전단은 그 문구 및 그림에 의하여 고소인을 한쪽에는 무기로 찌른 머리를 가진 야누스의 머리 (2 개의 머리)로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전단의 핵심적인 내용을, 고소인을 선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래에 있어서 전쟁상태의 위험이 더욱 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법원은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으로부터는 하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1. 먼저 이 사건 주장의 핵심을 위와 같이 확정 시킨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에서 사실관계의 주장이 아니라, 가치판단이 문제로 되고 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역시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BCH bei Dallinger, MDR 1955, 396; BGH JR 1977, 28; Sen E OLGSt §185, 5. 27; Sen E NStZ 1981, 183). 그리고 본건에 있어서의 전단의 기재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하등의 구체적 사건에 관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원심법원의 위 판단은 별무리 없이 승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본건 주장의 핵심은 중요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다. 위 비판은 고소인의 사회적 및 정치적인 명성에 관련되고 있으며, 따라서 독일기본법 제 1 조 제 2 항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3. 어떤 진술이 타인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행해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RGSt 60. 35; Bay ObLG NJW 1957, 1607f; Sen E NSTZ 1981.183; Sen E OLGSt §185, 5. 27)

이 점에 관련하여 원심법원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전단에 있어서는 주로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집단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데모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고, 그리고 위 데모의 주동자들에 있어서는 제 2 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을 맞이하여 전쟁의 공포를 되살림으로써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연방수상후보인 스트라우스의 지도하에 있는 연합정당의 연방의회선거에 있어서의 승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표이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건 전단은, 기본권의 범주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진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일반적인 성문법 및 개인적인 명예에 의해서 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명예보호와,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성문법, 예를 들어 독일형법 제 185 조와 같은 것은 이러한 기본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Bverf GE 7, 198 ; 12, 287; NJW 1980, 2069)

이 경우에 있어서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에 기한 기본권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기능수행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이념적인 투쟁 및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VerfGE 5, 85, 205; 7, 198; 12, 113, 125).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에 관한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만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복수적으로 발생되게 마련인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BVerfGE 12, 125)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상에 대한 정치적인 분쟁에 대하여 형법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BGHZ 45, 308; OLG Dusseldorf NJW 1972, 650; OLG Karlsruhe NJW 1982, 647 ; SenE NJW 1977, 398)

4. 나아가서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위 「Gegenschlag」에 대한 판례에 의해서도 지지되어질 수 있다. 즉 어떤 비판자에게 그가 주장한 견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그의 명예보호가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BVerfGE 12, 132; 24, 278, 286; BGH St 12, 287, 294; SenE NJW 1977, 398)

이러한 원칙은 비방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스스로 개인적인 비방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독일연방최고법원은 1980년 5월 13일자 판결(NJW 1980, 2069f)에서 분명히 선언하였다.

『비방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스스로 독일기본법 제 5조 제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여론형성의 절차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였는지, 그와 함께 그가 자의로 토론의 요건에 굴복하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위해서 그의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사생활의 영역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가 주로 문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1980년의 연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CPU/CSU 정당의 당수인 본건고소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선거의 결과에 대한 본건의 호소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에 이르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B.

그리하여 본건 전단의 문구에는 하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원은 다시 위 만화에 의한 표현에 있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발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지구의 핵심내용이 하등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에 의한 모욕은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Bay OBlg UFITA 1966, 356, 363 ; Lenckner in Schonke/Schroder, 21. Aufl. §185 Rdnr. 6; 예외적인 경우에 관해서는 Rudolphi SK §185 Rdnr. 8; a. A. RG JW 1924, 1526).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법원이 본건 만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등의 모욕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정당하게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은 문제로 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위 점에 있어서도 역시 사실심법관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법원은 만화에 의한 진술도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본건 만화에 관련해서는 원심법원이 위 만화의 사본을 판결문에 첨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상세히 묘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건의 만화가 만일, 고소인 자신의 머리를 해골로서 묘사하였었다면, 당원은 이를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원심법원은 본건 만화의 모습을, 위 두개골이 고소인 자신의 머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하여 고소인의 머리는 온통 무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는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원심법원의 판결은 위 만화를, 친근하고 진지한 고소인의 옆얼굴이 무기로 가득찬 두개골과 연결시켜진 야누스적인 2 개의 머리로서 인정하였던 것이다. 원심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고소인은 단지 죽음의 상징인 해골과 연결되어져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만화의 표현은 하등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연방의회총선거에 관련된 정치적인 주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며 원심법원이 위 만화는 정책에 대한 공격을 내용으로 한 것이지, 고소인자신의 명예에 대한 공격을 내용으로 한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형식도 또한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표의자의 자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다(BVerfG, NJW 1980, 2069, 2070). 그리고 그 진술이 관찰자에 대해서 감정적인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 만으로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OLG Köln v. 10, 11, 1981-15 U 77/81 사건)

그런데 만화에 의한 모욕에 있어서의 다른 전형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조롱, 왜곡, 암시 등과 같은 것은 본건에 있어서 확인되지도 않았고 또 분명하지도 않으며, 또한 상고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의 존재가 주장되지 아니하였다,

C.

이러한 사실 및 법률상태하에서는 원심법원은 본건의 만화가 독일기본법 제 5 조 제 3 항의 예술의 특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욕이 어떠한 경우에도 독일형법 제 193 조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당원이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